

의안번호	제 559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11월 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년 11월 4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

2. 주요내용

-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 직종전환(정원의 총수 3,118명 : 변동없음)

구 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
계	증194 (1,223 → 1,417)	△186 (186 → 0)	△8 (20 → 12)
· 기능직 → 일반직	186	△186	-
· 별정직 → 일반직 ※ 전문경력관 9명 포함	12	-	△12
· 일반직(계약직) → 별정직 ※ 비서 및 보좌관	△4	-	4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직급별 정원”을 “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<u>직급별 정원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<u>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[별표 1]

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% 이상	1% 이내

※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
비 율	6% 이내	18% 이내	32% 이내	33% 이내	10% 이상	1% 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6% 이내	84% 이상	26% 이내	74% 이상

3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 이내	3% 이내	6% 이내	8%이내	14% 이내	31% 이내	37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10% 이내	50% 이내	10% 이내	10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
※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
총 계	3,118	-				
정무직 계	1	1				
도지사	1	1				
일반직 계	1,417	-				
1~2급	1					1
2~3급	1		1			
3급	11	9		1		1
3~4급	2	2				
4급	66	41	7	5	7	6
5급이하 소계	1,327	-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-				
별정직 계	12	-				
1급 상당	1	1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11	-				
연구직 계	143	-				
연구관	23	1		20	2	
연구사	120	-				
지도직 계	24	-				
지도관	6			6		
지도사	18	-				
소방직 계	1,479	-				
소방정	12	3		9		
소방령이하	1,467	-				
교육공무원 계	42	-				
총장	1			1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·전임강사	30			30		
조교	11	-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관련 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일반직공무원 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 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> ※ 기능직공무원 삭제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>

1. 정무직공무원

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> ※ 계약직공무원 삭제

4. 삭제 <2011.5.23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5.23, 2012.12.11>